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3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국토교통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3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

## 3. 주요내용

가. “○○제도(정책)의 도입(안 제○조)” 또는 “○○제도의 폐지(현행 제○조 삭제)” 등

1) “-- 함에 따라 ----할 필요가 있음.” 또는 “현행 ---는 ---하여 --한 문제점이 있음.” 등으로 표현

\* 1) 항목의 기재방법

- 대통령지시, 정책방향의 변경, 상황변동,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(정책)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
-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·결정례의 요약,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, 특정사건의 경위,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

2) “----하던 것을 ----하도록 함” 또는 “---을 내용으로 하는 -- 제도를 도입함.” 등

\* 2) 항목의 기재방법

- 해당 제도(정책)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·후를 대비하도록 하고,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

3) ---하게 됨에 따라 -----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.

\* 3) 항목의 기재방법

-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

나. ○○제도(정책)의 도입(안 제○조)

“----- 함에 따라 ----할 필요가 있으므로, -----하던 것을 -----하도록 함.”

\* 내용에 따라 가. 나. 다.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.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(“○○제도의 도입”)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

제3조(다른 법령의 폐지) ①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OO에 관하여는  
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~에 관한 적용례)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

제5조(~에 관한 특례)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

제6조(~에 관한 경과조치)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

제8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| 개    정    안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44) 201 - 4157 |